

光州廣域市西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

1995年 9月
總務社會委員會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5年 9月 12日
- 나. 提 出 者 : 光州廣域市 西區廳長
- 다. 回附日字 : 1995年 9月 20日
- 라. 上程日字 : 1995年 9月 25日
- 마. 開催回數 및 日數 : 1回 (95年 9月 25日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保健所長 白 落 朱)

가. 提案 事由

- 보건소 치과진료업무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 수가 조례
중 기타수가 징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함

나. 主要骨子

○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석제거, 복합레진(전치부) 치료등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수준으로 정하여 진료비를 징수코자함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李海萬)

○ 보건소내 진료과목중 치과진료 과목을 다양화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비수준의 진료비를 징수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 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음.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략

5. 討論 要旨 : 생략

6. 審査 結果 : 원안 가결

7. 少數 意見 要旨 : 없음

8. 其他 事項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중 '의치,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'를
'의치, 보철, 치석제거, 복합레진(전치부)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정하
되 별표 2 에 의거 징수한다'로 한다.

제7조제1항중 '별표'를 '별표 1'로 한다

【별표 1】 및 【별표 2】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 (기타수가)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<u>의치, 보철</u>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<u>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6조 (기타수가) ----- ----- <u>의치, 보철, 치석제거, 복합레진 (전치부) 치료</u>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<u>실비수준으로 정하되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.</u></p>
<p>제7조 (증명발급수수료)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<u>별표에 의거 징수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 (증명발급수수료) ① ----- ----- <u>별표 1에 -----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[별 표 1]

제 증 명 발 급 수 수 료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수 수 료	비 고
1. 근로자 건강진단서	1 통	600	
2.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	//	600	
3. 일반진단서	//	500	
4. 특별진단서	//	2,000	요양신청용, 병사용 상해진단용
5. 사체검안서	//	5,000	
6. 성별 및 연령감정서	//	2,000	
7. 위생분야종사자건강진단서	//	2,000	X - 선, 간염검사 포함
8. 사망진단서	//	500	
9. 출생,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	//	500	
10.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	//	300	
11. 1 통 초과발급	//	100	

[별 표 2]

기 타 수 가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금 액	비 고
1. 치 석 제 거	1 회	20,000	
2. 복합레진(전치부) 치료	1 치아당	15,000	